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증 규정

제정 2012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생증)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한 학생은 총장이 발행하는 학생증을 발급받아 신분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학생증의 종류와 규격, 표시사항,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조(유효기간 및 효력의 상실) ① 학생증은 재학기간 중에만 유효하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1. 졸업, 휴학, 제적,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학적을 상실한 경우
- 2. 학생증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
- 3. 학생증이 심하게 훼손되어 기재사항이나 직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
- 4. 전자기록이 훼손되어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

부칙(제27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